

#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운영 지침

시행일 : 2022. 04. 01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위원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융합전공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융합전공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융합전공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(양 캠퍼스 교무처장)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캠퍼스별 7인 이내의 위원과 양 캠퍼스 학사지원팀장을 간사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 캠퍼스의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5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경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